

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81호(2011.03.2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59호(2016.08.2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89-4번지 일대 「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」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8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가. 공 원 명 :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(가칭)

※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소공원

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9-4호 일대

다. 면 적 : 1,137.9㎡

라. 결정취지

- 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(양천구 고시 제2016-59호) 공원면적 증가에 따른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

마.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: 따로 붙임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바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원녹지과(☎02-2620-3576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